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2,220,009	15,666,600
일반회계	502,903,227	15,087,097
특별회계	19,316,782	579,503
기타특별회계	19,316,782	579,503
상수도특별회계	3,928,275	117,848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998,745	59,9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29,077	27,872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3,404,665	102,140
주차장특별회계	210,000	6,3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6,020	1,381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800,000	264,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51,22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